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1. 20 선고 2020가단589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0. 12. 16.

판결 선고 2021. 1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. 12. 29. 접수 제888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. 6. 21.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원용일

별지